

교육만족도조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사범위) 교육만족도 조사는 강의·학습, 학사관리, 교육과정, 교육환경, 대학행정, 대학 생활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특정 범위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다.

제3조(조사시기 및 대상) 교육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조사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 조사대상은 재학생은 필수로 하고, 산업체, 졸업생, 교직원, 학부모를 포함할 수 있다.

제4조(주관부서) 교육만족도는 학생처에서 주관하여 조사한다. 다만, 특정범위에 한하여 조사 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) ① 위원회는 각 처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,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
3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 및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4. 교육만족도 조사 방법 및 체계에 관한 평가
5. 기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교육만족도 조사 및 활용 절차) ① 주관부서에서는 교육만족도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 교육만족도를 조사한다.

② 각 부서에서는 필요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